

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- 28호

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. 7. 5.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

(정일윤 의원 대표발의)

1. 제 안 이 유

물놀이, 수상레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실군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생존수영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 요 내 용

- 가. 목적, 정의에 관한 규정 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 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(안 제4조)
- 라.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마.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(안 제6조 ~ 안 제7조)

3. 참 고 자 료

- 가. 관련법령 : 『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』,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 등 : 집행부 의견조회
- 라. 심사예고 : 2024. 7. 5 . ~ 7 . 10 .(5 일간)
- 마. 기 타
 - 1) 제정 조례안
 - 2)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실군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생존수영교육”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은 임실군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
2.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방법
3. 생존수영교육의 참가 대상 및 프로그램
4.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
5.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
6.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영유아, 학생, 노인,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.

제5조(재정지원)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)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)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임실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『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』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·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·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기관·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

다) · 군 ·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